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2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김위상 · 박성훈 · 안철수
박충권 · 우재준 · 서명옥
최은석 · 김선교 · 신성범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요건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사체가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

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자(이하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사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분석보고서
2. 탑재체 운용계획서
3.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4.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평가(오염 저감방안을 포함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우주발사체의 발사가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시 제출된 서류로는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서류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 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사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안전성 분석보고서
<신 설>	2. 탑재체 운용계획서
<신 설>	3.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신 설>	4.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오염저감방안을 포함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 ----- -----. 다만,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우주발사체의 발사가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

<p><u>4. (생략)</u></p> <p><u><신설></u></p> <p><u>④ · ⑤ (생략)</u></p> <p><u><신설></u></p>	<p><u>향</u></p> <p><u>5. (현행 제4호와 같음)</u></p> <p><u>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시 제출된 서류로는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p> <p><u>⑤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u>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u></p> <p><u>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서류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